

2. 都市計劃施設 公園決定(案) 意見聴取 結 果 報 告 書

2002. 7. 25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7월11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7월1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(2002. 7. 25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提案説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황 의 진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구 관내 구기동 139-16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(안)을 공람광고하고
-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도시계획 결정(안) 조서

1)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(안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공 원	근 린 공 원	종로구 구기동 139-16	-	중) 2,127	2,127	-	구기동 139-10 어린이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

3. 質疑 및 答辯 要旨

(질의자 : 심 재 환 위원)

(답변자 : 황 의 진 도시관리국장)

문) 구기동 139-16번지는 경사가 심하여 그 곳만으로는 공원시설로 부적합한 것 같으므로 그 주변의 경사가 완만한 곳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?

답) 네.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4. 意見採擇 : 없음

5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